

생활관 벌점제

1. 생활 벌점제 구성

가. 생활관에서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정해진 벌점을 부여 한다.

나. '벌점'이 100점 이상 누적된 관생에 대하여는 영구퇴사의 징계를 한다. 단, 소명의 기회는 부여할 수 있다.

다. '벌점' 수행자는 **학생생활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처장이 지명하는 자도 포함한다.

2. 생활 벌점제의 적용 대상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벌점의 경감

생활관 내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생활관 환경개선에 기여한 관생에 대하여는 기여 정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4. 벌점부과기준

생활관 내에서의 수칙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위반내용
영구 퇴사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재(실화 및 방화) 및 절도 행위(생활관 주변에 있는 이륜차 포함) ② 이성 간의 혼숙 행위 ③ 폭력행위 등으로 교내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받은 관생 혹은 형사/민사 사건에 해당하는 관생 ④ 생활관 입사 신청 및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및 이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 관생(그 외 열쇠 임의대여, 비밀번호 공유 등) ⑤ 타인으로 하여금 생활관을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력한 것으로 인정 및 이로 인하여 생활관을 혼자 사용한 관생 ⑥ 입사 또는 퇴사 시 이동기간까지 퇴사 또는 다음 입사자를 위해 이동을 완료하지 않는 관생 ⑦ 이동기간에 짐을 빼지 않고 방치하거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실 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⑧ 관내 흡연 1회 적발 시 영구퇴사(모든 흡연 행위 포함) ⑨ 도박 행위(유사 도박 행위 포함)
벌점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의적인 기물 파손 행위 ② 룸메이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밤 11시 이후 게임, 노래, 긴 통화, 컴퓨터 작업 등) ③ 개인물품(대형)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복도, 세탁실, 휴게실 등) ④ 지정된 장소 이외 구토, 대소변 행위
벌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력 행위(언어폭력포함, 상벌위원회의 상정되지 아니한 건) ② 개인물품(소형)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복도, 세탁실, 휴게실 등) ③ 타인의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 ④ 이성(異性)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⑤ 외부인을 무단 입실시키는 행위 ⑥ 타생활관에 무단 입실하는 행위

		⑦ 비 흡연 지역에서의 흡연하는 행위 ⑧ 음주 및 취사 행위 ⑨ 화재 유발 행위(*전열기 또는 인화물 소지/사용) ⑩ 생활팀 직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행위 ⑪ 동물 사육 행위 ⑫ 지정된 주차 공간 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이륜차, 전동 이륜차, 자동차 등 모든 차량 일체)
별점	30	① 공용기물, 비품의 호실 간 무단이동 및 개인소유 행위 ② 학생생활팀 승인 없이 호실을 임의 이동하는 행위 ③ 고성방가 등 생활관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④ 지정된 장소 이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별점	20	① 휴게실 내 장시간 투숙, 세탁물 건조 행위 ② 개인 호실 정리정돈, 청결 불량상태

* 생활관내 승인된 전열기 : 전기포트, 헤어드라이기

5. 별점 누적자에 대한 조치 사항

가. "영구퇴사" 대상자의 징계는 학생생활처장이 시행한다.

나. "영구퇴사" 결정 대상자의 학부모 및 지도교수에게 "퇴사"를 통보할 수 있다.

다. "별점"을 받은 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처장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당성과 형평성이 인정된다면 별점을 경감할 수 있다.

6. 별점 삭감 및 구제활동 기준

생활관 내에서의 수칙 위반 내용에 따라 별점 삭감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비고
별점 삭감 및 구제 활동	100 ○ 공로자 - 사고 예방 및 처리에 기여한 경우 - 행정부서(시설팀, 안전팀, 학생생활팀 등)의 사건 사고보고 시 기재된 사고 예방 및 처리에 기여한 관생 - 기여 정도에 따라 100점을 상한으로 부여	생활관 공로 추천서 첨부 [생활관 자치회 또는 생활관 사감 추천]
	50 ○ 모범 생활관생 - 선행, 봉사, 질서유지에 기여한 경우 - 생활관 자치회 또는 사감 추천	
	20 ○ 우수 아이디어 제안 -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개선효과가 뚜렷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10 ○ 생활관 봉사활동 - 생활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

* 신고제를 적용하며 신고방법에 대하여 수행자는 각동 사감과 순찰 사감 또는 생활관 자치회에게 신고한다.